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월 30일에서 2024년 1월 30일로 2년 연장하고, 국방부 기획조정실 일부 분장사무를 운영지원과로 이관하며, 전문경력관 2명(가급1명, 나급1명)을 행정·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조정실 하부조직의 명칭과 국방정책실 일부 분장사무의 명칭을 변경하며, 전력자원관리실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인사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의 직급을 변경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조정의 운영을 종료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부서의 존속기한을 2022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1. 00. ~ 12.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령 제 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 중 “정보체계융합담당관”을 “정보체계데이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에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체계융합담당관”을 “정보체계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8항제1호 중 “국방정책의”를 “국방정책·전략의”로 한다.

제11조제14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방위비분담시설사업 추진 관련 대미 협의

17. 방위비분담시설사업의 집행 승인 및 조정·통제

제11조제15항 중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전력지원시설사업 추진전략 수립

20.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21.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예산 편성·운영 및 결산

22.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집행관리

23. 전력지원시설사업의 대 국회 및 국민 홍보

제11조제16항제2호 중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부대이전시설사업 및 부대개편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전력지원시설사업의”를 “국방

· 군사시설이전사업(부대이전시설사업 및 부대개편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과 전력지원시설사업의”를 각각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의”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15명(4급 2명, 5급 11명, 6급 2명)”을 “15명(4급 2명,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10”을 “211”로,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호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관 “161”을 “162”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기획연구관) 1”과 “전문경력관 나군(기록보존사) 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2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13”을 “12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6”을 “37”로 하고,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11”을 “212”로,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호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관 “161”을 “162”로 하며, “전문경력관 가군(기획연구관) 1”과 “전문경력관 나군(기록보존사) 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 중 “2022년 1월 30일”을 “2025년 1월 30일”로 한다.

국방부령 제91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방부령 제 97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국방부령 제100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2년 2월 28일”을 “2025년 2월 28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⑤ (생략)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담당관·조직총괄담당관·조직관리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계획예산총괄담당관·인력운영예산담당관·전력유지예산담당관·재정회계담당관·정보화기획담당관· <u>정보체계융합담당관</u> ·정보통신기술정책담당관·사이버정책담당관 및 사이버 대응기술팀장 각 1명을 두되, 기획총괄담당관·조직총괄담당관·조직관리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계획예산총괄담당관·인력운영예산담당관·전력유지예산담당관·재정회계담당관·정보화기획담당관· <u>정보체계융합담당관</u> 및 사이버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u>정보통신기술정책담당관</u> 은 영관급장교로, <u>사이버대응기술팀장은</u>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⑥ ----- ----- ----- ----- ----- ----- <u>정보체계데이터담당관</u> ----- ----- ----- ----- ----- <u>정보체계데이터담당관</u> ----- ----- ----- ----- -----

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 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 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 다. ⑦ ~ ⑨ (생 략) ⑩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 한다. 1. ~ 10. (생 략) 11. <u>문서·기록물 관리 제도의 개선</u> ⑩ <u>정보체계융합담당관</u>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국방정책실) ① ~ ⑦ (생 략) ⑧ 기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기 및 장기 <u>국방정책</u>의 수 립·종합 및 조정 제11조(전력자원관리실) ① ~ ⑬ (생 략) ⑭ 시설제도기술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15. (생 략)	----- ----- ----- ----- -----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 ----- ----- 1. ~ 10. (현행과 같음) <삭 제> ⑩ <u>정보체계데이터담당관</u>----- ----- ----- 제9조(국방정책실) ① ~ ⑦ (현행 과 같음) ⑧ ----- ----- 1. 중기 및 장기 <u>국방정책·전 략</u>의 수립·종합 및 조정 제11조(전력자원관리실)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 ----- 1. ~ 15.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u>16. 방위비분담시설사업 추진 관련 대미 협의</u>
<u><신 설></u>	<u>17. 방위비분담시설사업의 집행 승인 및 조정·통제</u>
⑮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u>17. 방위비분담시설사업 추진 관련 대미 협의</u>	<u><삭 제></u>
<u>18. 방위비분담시설사업의 집행 승인 및 조정·통제</u>	<u><삭 제></u>
<u><신 설></u>	<u>19. 전력지원시설사업 추진전략 수립</u>
<u><신 설></u>	<u>20.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중기계 획 수립</u>
<u><신 설></u>	<u>21.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예산 편성·운영 및 결산</u>
<u><신 설></u>	<u>22.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집행관 리</u>
<u><신 설></u>	<u>23. 전력지원시설사업의 대 국 회 및 국민 홍보</u>
⑯ 부대건설사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⑯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부 대이전시설사업 및 부대개편</u>	2. <u>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부 대이전시설사업 및 부대개편</u>

<u>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 다)과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추 진전략 수립</u>	<u>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추진전략 수립</u>
3. <u>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과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중기계획 수립</u>	3. <u>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의 중기계획 수립</u>
4. <u>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과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예산 편 성·운영 및 결산</u>	4. <u>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의 예산 편성·운영 및 결산</u>
5. <u>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과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집행관리</u>	5. <u>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의 집행관리</u>
6. <u>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과 전력지원시설사업의 대 국회 및 국민 홍보</u>	6. <u>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의 대 국회 및 국민 홍보</u>
제1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① (생 략)	제1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 (4·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5명(4급 2명, 5급 11명,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할 수 있다.	② ----- ----- ----- ---15명(4급 2명,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	
·	·	·	
일반직 계	·	·	
·	·	·	
·	·	·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공업사무관·임업사 무관·보건사무관·환 경사무관·항공사무관 ·시설사무관·방재안 전사무관·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210</u>	<u>211</u>	+1
행정주사·사서주사·공 업주사·임업주사·보 건주사·환경주사·항 공주사·시설주사·방 재안전주사·전산주사 ·방호주사·방송통신	<u>161</u>	<u>162</u>	+1

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	·	·	
·	·	·	
전문경력관 가군(기획연 구관)	<u>1</u>	<삭 제>	-1
·	·	·	
·	·	·	
전문경력관 나군(기록보 존사)	<u>1</u>	<삭 제>	-1
·	·	·	
·	·	·	

[별표 1의2]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	
·	·	·	
일반직 계	·	·	
·	·	·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 술서기관	<u>13</u>	<u>12</u>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36</u>	<u>37</u>	+1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임업사 무관·보건사무관·환 경사무관·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방재안 전사무관·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211</u>	<u>212</u>	+1
행정주사·사서주사·공 업주사·임업주사·보 건주사·환경주사·항 공주사·시설주사·방	<u>161</u>	<u>162</u>	+1

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호주사 · 방송통신 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 ·	· ·	· ·	
<u>전문경력관 가군(기획연 구관)</u> · ·	<u>1</u>	<u><삭 제></u>	-1
<u>전문경력관 나군(기록보 존사)</u> · ·	<u>1</u>	<u><삭 제></u>	-1